

붙임3

연구개발계획서 제출방법 및 지원 제외사항

□ 제출방법 :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신청·제출

- ☞ 제출경로 : www.smttech.go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과제신청 → 컨소시엄형 과제 신청 → 과제신청대상공고 →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(구비서류) 등록
- ☞ 작성양식 확인 : www.smttech.go.kr → 정보마당 → 알림마당 → R&D 사업공고 → 2023년 컨소시엄형 기술개발지원 시행계획 공고
- ☞ 접수 완료 및 다시 수정한 후에는 반드시 "제출하기"를 클릭한 후 "제출완료" 여부 확인 필요 (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"제출완료"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)

○ 제출절차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회원가입	온라인 직접입력	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	접수 확인 및 완료
-	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	연구개발계획서 본문1	제출완료 확인

① 1단계 : 회원가입

-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tech.go.kr)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,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

② 2단계 :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

-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의 내용을 **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**로,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tech.go.kr)을 통해 **직접 입력**

③ 3단계 : 작성된 개념계획서 파일 업로드

-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의 내용을 작성·업로드 하는 단계로, 한글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tech.go.kr)에 업로드

④ 4단계 : 접수 확인 및 완료

- 3단계 완료 후 접수 확인
- ☞ 접수 완료 및 다시 수정한 후에는 "제출하기"를 클릭한 후 "제출완료" 확인 필요

□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

- ☞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,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,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·발견되는 경우 평가·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☞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

-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③ 기(既) 개발/기(既) 지원 여부
 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
 -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
 - 신청기업이 기 생산·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

구 분	확인방법
정부에 의한 기 지원 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	○ 정부 R&D 기 지원 이력 확인 -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 → 과제참여·관리 → 유사과제 → 유사과제 검토 시작하기 ○ 중소벤처기업부 R&D 기 지원 이력 확인 -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 → 정보마당 → 지원과제조회 →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 검색

-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 - 연구개발기관, 대표자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, 성과 실적 입력(장비 구입실적 등), 회수금,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
*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

구 분	확인방법
의무사항 불이행	○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 → 과제수행 → 제재조회 → 중기 R&D사업 제재조회

⑤ 참여제한 여부

-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구 분	확인방법
참여제한	○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 → 과제신청 → 과제신청안내 → STEP1/사전준비사항 → 참여제한 확인 ○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.go.kr) → 과제관리 → 제재정보조회 등

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(단,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(공사)는 예외)

- 연구개발기관,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*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

㉠ 기업의 부도(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)

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
* 단,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,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,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

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
* 단,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,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,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

㉠ 파산·회생절차·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
- 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
< 관련 문의처 >

- ☞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→ 신용회복위원회(www.ccrs.or.kr, ☎1600-5500)
- ☞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(보증) 및 재기지원 보증 →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 (www.rechallenge.or.kr, ☎055-751-9656)

㉡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(정부지원금액이 5억원 미만인 창업성장사업은 해당 없음)

- * 단,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,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에 따른 “채권은행 협의회 운영협약(채권은행 협약)”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, 시설투자(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·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,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)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,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
- **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, 상환전환우선주(RCPS))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

구 분	확인 근거 (증빙서류)
부채비율, 자본잠식 등	■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 *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('22년도) 재무제표(국세청 발급)를 근거로 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('21년도) 재무제표(국세청 발급)로 판단

<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>

- ☞ 울산광역시 동구, 경상남도 거제시, 통영시·고성군, 창원시 진해구, 전라남도 목포시·영암군·해남군, 전라북도 군산시
- *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< 관련 문의처 >

- ☞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에 따른 “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(채권은행 협약)”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
→ 주채권은행에 문의
- ☞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
→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(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)
→ 공장, 기계장치, 시설 등 구입(신축) 증빙자료

-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대면평가(또는 현장조사) 등에서 재무제표(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)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* 단,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(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)까지 제출유예 가능
- ⑧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 등) 및 각 기관의 대표자, 연구개발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
- ⑨ 수행과제수 및 과제 인건비 계상률
-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, 아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.
 - * 단,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만 해당하며,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함
- ㉠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
- ㉡ 사전조사, 기획·평가·연구 또는 시험·검사·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
- ㉢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
- 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(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)
- 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
- ㉥ 위탁연구개발과제
- ㉦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, 고등교육재정 지원사업,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과제
- ㉧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
- ㉨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제
- * 소재·부품·장비 과제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 과제에 해당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적용제외

-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인건비 계상률이 100%를 초과한 경우,
 - * 단,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%로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출연 연구과제 총 인건비 계상률이 100%에 미달할 경우 신청과제의 인건비 계상률을 포함하여 최대 130%까지 계상할 수 있다.
- 사업공고 시 안내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인 과제는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.
 - * 단, 신규과제와 중복되는 기간만큼의 인건비는 중복 산정할 수 없다.